

의안번호	2211091
의 퇴 인	정혜경의원
회 답 일	2025.7.28.
추계번호	25B346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3조의2(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기관) 신설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고 하는 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을 요청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선정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제2항)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3조의2제3항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등 업무위탁 (안 제53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기관(이하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을 요청하고 대행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기관의 수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알 수 없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 범위 및 수준 또한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 유사사례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¹⁾에 따라 협의대상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²⁾에 평가대행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함
 - － 다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공단에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원한 사례는 없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제32조(평가대행자 선정기관)

- ① 사업자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협의대상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평가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선정을 요청하는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선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